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10.10.14 (목 14:00

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박문희 의원(찬성자 6인)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9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(안 제1조~안 제4조, 안 제6조~안 제9조, 안 제12조 등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다만,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